

지정번호 제 호

소프트웨어진흥단지 지정서

- 단 지 명:
- 지정면적: m^2 (건축물면적 : m^2)
- 단지의 소재지: 외 필지
- 단지지정자 성명: (회사명 또는 사업자명)
- 지정조건:

위의 시설을 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단지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

직인

준 수 사 항

1.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 - 가. 소프트웨어진흥단지로 지정을 받으려거나 조성하려는 지역에 25인(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50인)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상주하고 있을 것
 - 나. 소프트웨어진흥단지로 지정을 받으려거나 조성하려는 지역에 소프트웨어 관련 시설 및 기관이 있을 것
 - 다. 교통·통신·금융기관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
2.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 제12조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됩니다.
 - 가. 진흥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 - 나. 진흥단지가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
 - 다. 진흥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
 - 라. 진흥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
< 변 경 사 항 >

[illegible]